

資料

工產品品質管理法을 品質經營促進法으로 改正

朴炳泰

(工業振興廳 品質管理課長)

<목 차>

1. 法改正의 背景
2. 改正法의 內容
3. 法律에 반영된 制度
4. 品質經營促進法의 施行
5. 맺음말

1. 法改正의 背景

工產品品質管理法은 1967년 3월 30일에 제정되어 '93년까지 26년동안 3차례의 개정을 거쳐 품질표시제도, 품질검사제도, 품질관리 등급제도 그리고 품질관리 진단제도를 주요 골격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이법은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국내 소비자를 목표로 했고, 사실 이법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각종 제도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세계는 냉전종식후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을 위한 전환기적 전통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관건이 될 새로운 자유무역체제가 수립되고 있는 한편 EC통합, NAFTA체결등 지역적 이해를 우선하여 인접 국가간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만 인정받던 인증제도인「품질관리등급제도」를 폐지하고 ISO 9000 시리즈로 불리워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품질보증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장벽을 타개하고, 수입개방으로 밀려들어 오게되는 외국 공산품과의 품질경쟁을 위해서는 국가가 품질을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옴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품질향상 자세를 바꾸어 기업 스스로가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품질부문에 대한 검사를 폐지하고,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안전검사만 실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국가에서는 종합적인 기업의 품질향상 대책으로 「품질경영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품질경영 활동이 우수한 기업등에 대하여 포상하는 등의 Incentive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품질경영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2. 改正法의 內容

가. 改正 主要骨子

- 1) 工業振興廳長은 工產品을 製造·供給하는 企業의 品質經營을 効果的으로 촉진하기 위하



여 品質經營의 基本方向등이 포함된 品質經營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도록 함(第3條)

2) 政府는 品質經營을 실천하여 品質向上 · 原價節減 및 生產性向上에 협저한 성과를 거둔企業, 企業生產現場의 分任班 및 品質名匠을 선정하여 褒賞등의 措置를 하도록 함으로써 品質經營의 실천을 激勵함. (第5條)

3) 工業振興廳長은 工產品을 製造 · 供給하는 企業의 品質保證體制를 認證하는 專門認證機關을 지정하고, 그 認證機關으로 하여금 自律的으로 品質保證體制의 認證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品質競爭力を 높이고, 輸出增大에 영향을 미치는 隘路要因을 제거하도록 함 (第6條 내지 第9條)

4) 工業振興廳長은 消費者가 品質을 識別하기 어려운 工產品의 製造業者등에 대하여는 당해 工產品에 品質表示를 하도록 하고, 品質表示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品質表示命令을 하며, 이에 위반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害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工產品의 販賣는 물론 보관등도 하지 못하도록 함 (第13條 내지 第16條)

5) 종전의 品質検査制를 安全検査制로 변경하고 그 檢査의 대상도 消費者的 生命 · 身體 · 財產등에 대한 危害發生의 우려가 있는 工產品으로 한정함으로써 企業의 부담을 덜어줌 (第17條 내지 第20條)

나. 品質經營促進法 全文

第1條(目的) 이 法은 工產品을 製造 · 供給하는 企業으로 하여금 品質經營體制를 확립하게하고 그에대한 認證制度를 導入하여 品質 및 技術競爭力を 強化하고 品質表示 및 安全検査制度를 실시함으로써 消費者的 이익과 安全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品質經營”이라 함은 工產品을 製造 · 供給(組立 · 加工 · 및 施設設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業體(이하 “企業”이라 한다)가 顧客이 원하는 品質의 工產品을 製造 · 供給하기 위하여 最高經營者가 設定한 品質目標를 달성할 수 있도록 全任員 및 職員이 體系的으로 品質을 設計 · 관리 · 개선하고 보증하는 經營活動을 말한다.
2. “品質保證體制”라 함은 企業이 品質을 보증하기 위하여 人的 · 物的 · 資源을 동원하고 이를 配分 · 관리하는 責任 및 그 運營節次등이 顧客이 원하는 品質의 工產品을 製造 · 供給할 수 있는 體制를 말한다.

第3條(品質經營基本計劃) ① 工業振興廳長은 企業의 品質經營을 촉진하기 위하여 品質經營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기본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名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企業의 品質經營 基本方向
2. 品質經營의 촉진을 위한 環境造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品質經營의 技法開發 및 普及에 관한 사항
4. 品質經營의 촉진을 위한 教育 및 指導에 관한 사항
5. 品質經營分野의 專門人力養成 및 活用에 관한 사항
6. 品質改善活動을 하는 企業내 生產現場의 小集團(이하 “分任班”이라 한다)活動에 관한 사항
7. 品質經營에 관한 專門機關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品質經營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工業振興廳長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工業振興廳長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企業 또는 團體등의 品質經營에 관한 實態를 調査할 수 있다.

第4條(品質經營診斷 등) ① 工業振興廳長은 企業의 品質經營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企業의 品質經營의 診斷을 위한 計劃(이하 “診斷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診斷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診斷計劃에 의하여 品質經營의 診斷을 받고자 하는 企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業振興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③ 工業振興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당해 企業에 대하여 品質經營의 診斷을 하여야 한다.

④ 工業振興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經營의 診斷을 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企業에 대하여 品質經營에 관한 指導를 받게 하거나 이를 개선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品質經營診斷의 節次 · 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은 商工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5條(品質經營優秀企業의 선정 등) ① 政府는 品質經營의 실행으로 인하여 品質向上 · 原價節減 및 生產性向上에 현저한 成果를 거둔 企業 또는 分任班을 선정하여 褒賞하거나 사업지원등을 할 수 있다.

② 政府는 企業내 產業現場에서 長期間 종사한 者로서 匠人精神이 透徹하고 分任班의 活動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品質經營의 촉진에 크게 공헌한 勤勞者를 品質名匠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 ·

分任班 및 品質名匠의 선정과 褒賞 기타 기타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認證機關의 지정 등) ① 工業振興廳長은 品質經營을 촉진하기 위하여 企業의 品質保證體制의 保證能力 및 信賴性에 대한 認證(이하 “品質保證體制引證”이라 한다)을 하는 機關(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認證審查員을 갖추어 工業振興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③ 工業振興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機關의 指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認證機關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工業振興廳長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認證機關의 業務에 해하여 指導 · 監督할 수 있다.

⑤ 認證機關의 지정기준 · 指定申請節次 및 認證審查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商工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7條(認證機關의 指定販消 등) 工業振興廳長은 認證機關이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일정한 기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認證機關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認證業務를 하지 아니한 때

2. 第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第8條(品質保證體制認證 등) ① 品質保證體制 認證을 받고자 하는 企業은 認證機關에 대하



여 品質保證體制에 관한 認證申請을 하여야 한다.

② 認證機關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認證申請을 받은 때에는 企業의 品質保證體制에 관하여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이하 “認證審查基準”이라 한다)에 의하여 審查하여야 한다.

③ 認證機關은 第2項의 规定에 의한 審查를 한후 認證審查基準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企業에게 品質保證體制認證을 하여야 한다.

④ 品質保證體制認證의 節次 및 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은 企業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商工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品質保證體制認證의 표시) ① 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은 企業은 당해 品質保證體制認證의 내용을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용하는 文書 또는 送狀등에 한하여 표시하고 이를 弘報할 수 있다.

② 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지 아니한 企業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弘報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研修機關의 지정등) ① 工業振興廳長은 品質保證體制認證을 촉진하기 위하여 品質保證體制認證에 관한 指導, 認證機關의 認證審查員의 養成및 研修를 담당하는 機關(이하 “研修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研修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業振興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③ 工業振興廳長은 第2項의 规定에 의한 研修機關의 指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5項의 规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의하여 審查를 한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研修機關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工業振興廳長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研修機關의 業務에 대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

다.

⑤ 研修機關의 지정기준·指定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商工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研修機關의 指定取消등) 第7條의 规定은 研修機關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認證機關”은 “研修機關”으로, “認證業務”는 “研修業務”로 본다.

第12條(品質保證體制認證工產品의 購買促進)

工业振興廳長은 品質保證體制認證을 받은 企業이 製造·供給하는 工產品의 購買促進을 위하여 國家,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规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또는 公共團體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第13條(品質表示) ① 消費者가 品質을 識別하기 곤란한 工產品(수입한 工產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工產品(이하 “品質表示對象工產品”이라 한다)의 製造業者·加工業者 또는 輸入業者(이하 “品質表示義務者”라 한다)는 그 工產品에 第14條 第1項의 기준에 의한 品質表示를 하여야 한다.

② 工業振興廳長은 品質表示對象工產品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第14條(品質表示의 기준등) ① 工業振興廳長은 品質表示의 기준을 工產品別로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그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规定에 의한 品質表示의 基準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中 工產品別로 工業振興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成分·性能·規格·用途·貯藏方法 기타 品質에 관련된 사항

2. 品質表示의 方法

3. 品質表示義務者 및 品質表示對象工產品의 販賣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第15條(허위의 品質表示등의 금지) ①品質表示義務者는 品質表示對象工產品에 허위의 品質表示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品質表示對象工產品의 販賣業者는 品質表示의 表識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品質表示命令등) ①工業振興廳長은 品質表示義務者가 品質表示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品質表示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工業振興廳長은 다음 각號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品質表示對象工產品이 消費者的 이익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販賣 또는 販賣를 위한 陳例·보관 및 運搬의 금지를命할 수 있다.

1. 品質表示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販賣業者가 品質表示를 하지 아니한 品質表示對象工產品을 販賣하는 경우

3. 第15條의 規定에違反하여 허위의 品質表示를 하거나 品質表示의 標識를 제거 또는 변경한 品質表示對象工產品을 販賣하는 경우

第17條(安全検査) ①消費者的 生命·身體상의 危害, 財產상의 損害 또는 自然環境毀損의 우려가 있는 工產品중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工產品(이하 “安全検査對象工產品”이라 한다)의 製造業者·加工業者 또는 輸入業者(이하 “安全検査義務者”라 한다)는 工業振興廳長의 安全検査를 받아야 한다.

②工業振興廳長은 安全検査對象工產品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한 安全検査의 方法·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商工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8條(安全検査의 기준등) ①工業振興廳長은 安全検査의 기준을 工產品別로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그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検査의 기준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 중 工產品別로 工業振興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및 종류

2. 成分·性能·規格 기타 安全에 관련된 사항

3. 檢查方法

4. 표시사항 및 방법

第19條(安全検査를 받지 아니한 工產品의 販賣禁止등) ①安全検査義務者, 安全検査對象工產品의 販賣業者 및 安全検査對象工產品을 營業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第17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安全検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安全検査에 合格되지 아니한 安全検査對象工產品을 販賣, 販賣를 위한 輸入·陳例·보관 또는 運搬이나 營業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工業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安全検査義務者·安全検査對象工產品의 販賣業者 및 安全検査對象工產品을 營業目的으로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당해 安全検査對象工產品의 파기 또는 收去를 명할 수 있다.

第20條(安全検査의 免除) 工業振興廳長은 條約 또는 產業標準化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產業規格의 표시를 許可받거나 승인을 얻은 商品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検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第21條(安全專門機關의 自主的活動의 지원)

①工業振興廳長은 工產品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消費者의 生命·身體상의 危害 또는 財產상의 손해등을 預防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영위하는 法人 기타 團體(이하 “安全專門機關”이라 한다)의 사업활동을 助成·지원할 수 있다.

1. 工產品의 安全을 檢定하는 사업
 2. 安全專門機關이 檢定한 工產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被害의 補填 事業
 3. 기타 消費者의 安全을 위하여 工業振興廳長이 정하는 사업
- ②安全專門機關이 第1項第1號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業振興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檢定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安全專門機關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檢定을 실시한 경우에는 工業振興廳長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製品·容器 또는 그 포장에 당해 檢定內容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安全專門機關이 아닌 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內容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專門機關의 지원방법·지원내용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商工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22條(檢定事業의 承認取消등) 第7條의 規定은 第2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工產品의 安全을 檢定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安全專門機關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지정”은 “승인”으로, “認證機關”은 “安全專門機關”으로, “認證業務”는 “檢定業務”로, “지정기준”은 “승인기준”으로 본다.

第23條(品質經營審議委員會)①工業振興廳에

工業振興廳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品質經營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②委員會는 品質保證體制認證·品質表示 및 安全檢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審議한다.
③委員會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보고·検査)①工業振興廳長은 品質表示 및 安全檢查制度의 運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者에게 製造·輸入·販賣 및 營業目的의 사용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書類·장부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1. 品質表示義務者
 2. 品質表示對象工產品의 販賣業者
 3. 安全檢查義務者
 4. 安全檢查對象工產品의 販賣業者
 5. 安全檢查對象工產品의 營業目的으로 사용하는 者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查를 行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標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内보여야 한다.

第25條(手數料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經營의 診斷을 申請하는 企業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查를 申請하는 安全檢查義務者
- ②認證機關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體制認證과 관련하여 필요한 費用을 받을 수 있다.
- ③研修機關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體制認證에 관한 指導, 認證機關의 認證審查員의 養成 및 研修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費用을 받을 수 있다.

第26條(聽聞) 工業振興廳長은 第7條·第1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 研修機關 또는 安全專門機關의 지정 또는 승인을 取消하거나 일정기간 業務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相對方 또는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7條(權限의 위임·委託) 工業振興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工業振興廳長이 정하는 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28條(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認證表示 또는 이와 유사한 表示를 하거나 이를 弘報한 者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安全檢査義務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安全檢査에 합격되지 아니한 安全檢査對象工產品을 販賣 또는 販賣를 위한 輸入·陳例·보관·運搬하거나 營業目的으로 사용한 者
4.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과기·收去 등 命令에 위반한 者

第29條(罰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 品質表示를 한 者 또는 品質表示의 標識를 제거하거나 变경한 者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表示命令에 위반한 者
3.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販賣 또는 販賣를 위한 陳例·보관 및 運搬의 禁止命令에 위반한 者
4.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業振興廳長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檢定事業을 영위한 者
5.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表示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者
6.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30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的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별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1條(過怠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7條·第1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 또는 送狀등외에 製品·容器 또는 포장에 品質保證體制認證의 표시를 한 者
3.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工業振興廳長(第27條의 규정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市·道知事を 말한다. 이하 같다)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工業振興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



기한 때에는 工業振興廳長은 지체 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認證機關 · 研修機關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工業振興廳長이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品質検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検査를 받은 工產品은 이 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検査를 받은 工產品으로 본다.

第3條(工產品品質管理審議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工產品品質管理審議委員會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經營審議委員會로 본다.

第4條(品質管理等級查定에 관한 適用例)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管理等級查定을 받은 等級查定商品의 製造業者 또는 等級查定加工技術의 使用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間 品質管理等級查定에 관한 종전의 工產品品質管理法 第10條 第6項, 同法 第12條, 同法 第13條, 同法 第18條, 同法 第23條第3號 및 第4號, 同法 第25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5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전의 行為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產業標準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號중 “工產品品質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検査”를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検査”로 한다.

② 產業安全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1項중 “工產品品質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品質検査”를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検査”로 한다.

第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工產品品質管理法 또는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工產品品質管理法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改正法律에 反映된 制度

가. 품질경영 기본계획

1) 근본취지

품질경영활동의 종합적 추진방향 설정과 기업의 품질경영활동 추진지침 제공

2) 내용

○ 공업진흥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품질경영 기본계획을 수립 · 고시도록 하고 품질경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단체등의 품질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품질경영촉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 품질경영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사항

— 품질경영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사항

- 품질경영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사항
- 품질경영 전문기관의 육성에 관한사항
- 기타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품질경영 우수기업등 선정

1) 제도신설의 배경

최근 약화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이완된 근로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품질경영체제의 도입과 올바른 근로정신의 고취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1987년 ISO(국제표준화기구)가 국제규격으로 채택한 품질보증시스템(ISO 9000시리즈)에 의한 품질경영활동의 조기도입 촉진과 건전한 근로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 및 공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포상등의 내용 및 취지

- 국제표준화된 품질보증시스템(ISO 9000시리즈)에 의한 품질경영활동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우대함으로써 기업의 품질경영활동을 촉진하고,
- 품질경영 우수분임조를 선정하여 포상·우대함으로써 경영총을 포함한 전사원의 참여를 통한 품질경영활동을 촉진하며,

○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품질명장」으로 선발하여 포상·우대함으로써 기업 및 우리사회에 건전한 근로정신을 고양코자 함.

다. 품질보증 시스템 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 개요

기업, 공장의 품질시스템이 ISO 9001~9003에 적합한지를 제3자(인증기관)가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등록, 공표하는 제도

※ISO 9000 Series의 태동과 그 내용

○ 태동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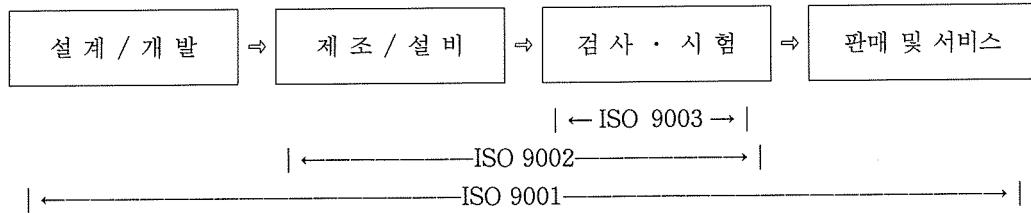
- 1970년대 구미에서 일본제품의 고품질 전략에 의한 경쟁력강화에 대한 자극과, 구미선진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항공기, 제약, 식품등의 산업에서 안전성 보증의 요구증가로 서구 각국이 각기다른 품질보증규격을 만듬.
- 이러한 규격의 차이에 발생하는 결함, 통상 장애요인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1976년부터 시작하여 1987년에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 9000시리즈라는 국제표준 품질보증규격을 만들게 됨.

○ ISO 9000 Series의 내용

규격	내용	성격
ISO 9000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의 규격선택 및 사용지침	ISO 9001~3과 9004의 규격부분 사용안내
ISO 9001 품질시스템	• 설계/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의 품질보증 모델 9001~9003까지의 전반시스템	구입자측이 공급자측에게 요구하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규정
ISO 9002	• 제조와 설치 및 품질검사등의 품질보증 모델 • 최종검사 및 시험의 품질 보증모델	
ISO 9003	품질경영 및 품질시스템의 요소 - 지침	
ISO 9004	품질경영 및 품질시스템의 요소 - 지침	공급자의 내부 품질경영시스템 개발 및 실시 가이드라인



※ 품질시스템 내용



2)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가) 현황

- 1987년 ISO(국제표준화기구)가 국가별로 다른 품질보증규격에 의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품질보증시스템 보증규격 (ISO 9000 시리즈)를 제정함을 계기로 58개국이 국가규격으로 채택하고, 36개국이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해외 Buyer들이 ISO 9000에 의한 품질시스템인증서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90% 이상이 Buyer의 요구로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획득 하였음.
 - ('93. 5월말 현재 영화금속 등 74개업체가 인증획득)
- EC에서는 위생, 환경, 안전, 소비자보호등 공공이익과 관련된 가스기기, 압력용기등 11개분야의 제품은 동 인증을 의무화하고, 곧 선풍기등 17개분야(11개분야)의 제품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됨.

나) 국내에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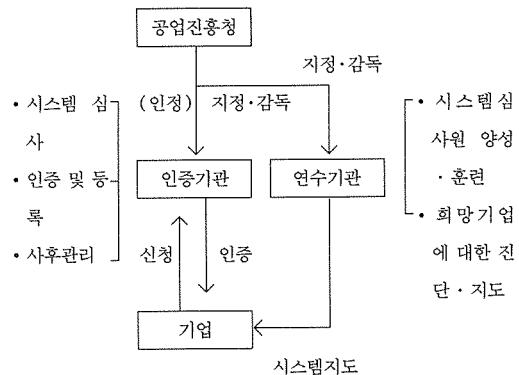
- 우리기업이 신속히 국제추세에 부응함으로써 무역상 기술장벽 타개
- 국내기업의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경비, 노력 등 경감
 - Buyer들에 의한 인증획득 요구나 인증의 무화품목 생산등의 경우

○ 외국인증기관의 인증심사로 인한 우리기업의 Know-How유출방지

○ 품질경영 시스템의 확립으로 불량원인 추적 등에 의한 품질향상과 사람이 바뀌어도 기록을 통한 조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인증기관에 의한 객관적 시스템인증으로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음.

3) 품질시스템인증제도 도입 실행계획

<인증체계>



<운영방법>

- 공업진흥청장이 일정기준에 의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국가간 또는 국가대 해외인증기관, 인증기관대 인증기관간의 상호인정을 추진토록 함.
- 「인증기관」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심사원을 활용하여 품질시스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함.

-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문서 또는 송장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 대외수출장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라. 품질표시제도

1) 품질표시제도의 근본취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표시를 보고 상품을 식별하여 원하는 제품을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음

2) 내용(현행과 동일)

※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지정은 공업진흥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함

마. 안전검사제도

1) 품질검사제를 안전검사제로 전환하는 배경

- 종래의 품질검사는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수준이 낮을 때에 안전성보다는 품질위주의 검사로써 우리제품의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경제적이익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던 제도임
-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수준도 향상되었고, 소비자의 안전확보에 보다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품질문제는 기업스스로의 노력에 맡김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의 안전에 직접 관련이 되는 안전위해 용품에 대하여는 국가에 의한 검사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안전검사대상 상품 및 검사내용

가) 대상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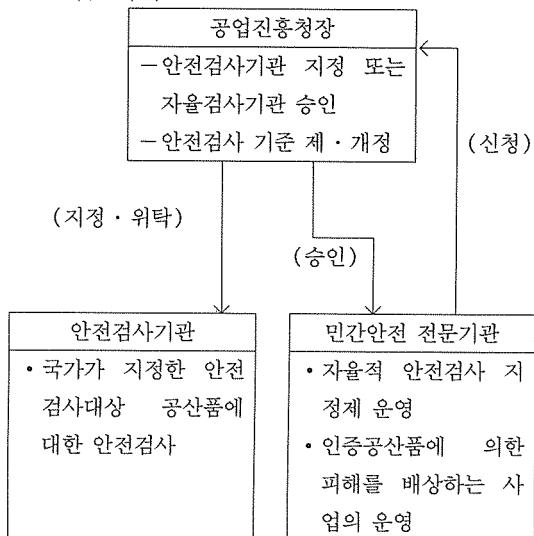
- 타 개별법 관장품목을 제외한 일반생활용품 및 환경위해용품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함)

나) 검사내용

- 기능상 결함에 의한 안전위해 사항
- 함유성분에 의한 인체·자연환경등에 대한 안전위해사항 등

3) 운영계획

가) 체계



나) 안전검사 실시방법

- ① 국가에 의한 검사
 - 공업진흥청장이 지정·위탁한 안전검사기관이 출고전에 Lot별 샘플링 검사 후 합격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함.
- ② 민간 안전전문기관에 의한 검사
 - 취지
 - 국가에 의한 검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피해사례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민간자율 안전검사활동을 조장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정착 및 자율적 안전성 강화노력을 유발시키고자 함.
 - 민간안전 전문기관 활동의 활성화
 - 분야별 민간단체등이 일정한 검사능력 · 설비를 갖추고 자율적 안전검사 업무



를 수행하고자 할 때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안전검사업무를 수행, 안전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한 민간안전전문기관별 검정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4. 品質經營促進法의 施行

- 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1조의 규정은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다.
- 따라서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는 법개정에 따라 바뀌도록 되어 있는 품질관리 등급사정제도, 품질검사제도 그리고 품질관리진단증 직권진단제도등이 협행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는 이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시행된다.
- 개정된 「품질경영촉진법」이 시행되어도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시행일을 기준하여 협행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등급사정을 받은 상품은 협행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각종 혜택과 벌칙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 정부에서는 이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 이 「품질경영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품질경영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상공자원부령)에 각각 규정하고 '94년 상반기중에 확정 공포하여 이 품질경영촉진법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

5. 맷음말

이법을 개정한 정부의 의도는 기업이 “품질향상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철저한 품질경영을 실천하여 개방화에 따라 국내시장으로 밀려들어 오는 외제상품과 품질로써 당당히 겨루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보증체제 인증(ISO 9000시리즈)을 획득하여 지역주의가 설정하는 기술장벽을 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품질에 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동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실시해온 국가에 의한 품질검사가 국내 소비자의 안전 및 경제적 이익보장 외에도 “검”자 표시를 상품에 붙여 줌으로써 구매력을 증진시켜 생산자의 이익증대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임을 보증해주던 “검”자가 없어지고 외제상품이 밀려들어와 국내시장에서 조차도 품질경쟁을 해야한다.

따라서 기업은 그동안 실시해온 국가에 의한 품질검사가 결코 선진국 제품의 품질수준 이상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고품질에서 발생하는 품질비용은 철저한 품질경영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줄여 상계시키겠다는 각오로 품질경영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